

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9월 3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8월 22일, 엄셋별 의원·이인식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8월 2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4년 9월 3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의사상자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, 희생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설치·관리하는 체육시설, 공영주차장, 문화시설 및 국가유산의 이용 요금 감면 조항 신설(안 제4조제2항제3호, 제4호 및 제5호)
- 2)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설립·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조항 신설(안 제4조제2항제6호)
- 3) 기타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(안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개정 이유

○ 본 개정안은 의사상자의 예우를 위해 금천구 관련 시설의 이용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의원 발의되었음

2) 주요 내용

가)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설치·관리하는 체육시설, 공영주차장, 문화시설 및 국가유산의 이용 요금 감면 조항 신설(안 제4조제2항제3호, 제4호 및 제5호)

나)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설립·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조항 신설(안 제4조제2항제6호)

다) 기타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(안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호)

3) 검토 의견

○ 본 개정안은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 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